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지원대책 마련 의무화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15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1091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지원대책 마련 의무화(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3
※ 참고자료	9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22109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6. 18.
3. 회 부 일 : 2025.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병원·약국·응급시설·복지시설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필수 시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병원·약국·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의 세부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지원대책 마련 의무화(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¹⁾ 중차 등 교통약자²⁾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행사 15일 전까지 공포하도록 하고(안 제16조의5 신설), 병원·약국 등 필수시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비상통행로 확보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5(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도로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이하 “대규모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

1)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시장 및 군수는 법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및 제16조).

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

현행	개정안
<신설>	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 기간 동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증차 및 운행 확대 2. 대규모 행사 지역 내 저상버스 운행 및 교통약자 우선 승차 시스템 운영 3.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위한 조치 4. 병원,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필수 시설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임시 교통수단 배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대책을 행사 개시 15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6(대규모 행사 시 필수시설 접근 보장) ① 국가등은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교통약자의 병원·약국·응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필수시설”이라 한다)에 대

현행	개정안
	<u>한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u> ② <u>국가등은 대규모 행사 기간 중 교통약자의 필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u> 1. <u>필수시설과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비상통행로 확보</u> 2. <u>필수시설 이용객을 위한 임시 주차구역 또는 하차 지점 지정</u> 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접근 보장을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시설과 협력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④ <u>제2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방안 및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의 대규모 행사가 있는 경우 다수의 인원이 집중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평소보다 제한되고, 병원·응급시설 등 필수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큼.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가 도로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병원 등 필수시설 접근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봄.

【 개정안에 따른 국가 등의 의무 】

의무	주체 등	비고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대책 마련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대책 1. 특별교통수단의 증차 및 운행 확대 2. 대규모 행사 지역 내 저상버스 운행 및 교통약자 우선 승차 시스템 운영 3.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위한 조치 4. 병원, 복지시설, 장애인 신설 등 필수 시설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임시 교통수단 배치	안 제16조의5 제1항·제2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 공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안 제16조의5 제3항
병원 등 필수시설 접근 보장 조치 강구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조치 1. 필수시설과 주요 도로 연결하는 비상통행로 확보 2. 필수시설 이용객을 위한 임시 주차구역 또는 하차 지점 지정	안 제16조의6 제1항·제2항
필수시설 접근 보장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안 제16조의6 제3항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버스, 지하철, 비행기, 선박 등 교통수단 및 관련 여객시설과 도로 등 교통

체계 전반에서 교통약자의 상시적·일상적인 이동권의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은 법률임³⁾.

이에 비추어, 개정안은 대규모 행사와 같은 일회적 또는 제한적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체계에 대한 일시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를 「교통약자법」에 규율하는 것이 법률의 본래 취지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정안전부 등 소관)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청 소관)에 지역축제 및 도심지 집회·시위 시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1. 참조)

나. 국토교통부 의견

대규모 행사 개최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교통약자법」은 평상시 모든 교통체계에서 교통약자의 상시적,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대규모 행사 개최 등 일회성·특수상황에 초점을 맞춘 별도 기준 마련은 「교통약자법」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